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92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이해민·김재원·김준형

서왕진 • 황운하 • 김선민

정춘생・차규근・신장식

강경숙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 결서 정본(正本)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, 그 등본(謄本)을 헌법재판소,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,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.

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,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.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(안 제13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 중 "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"을 "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	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
과) ① (생 략)	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	②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
<u>에는</u>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	선언하는 즉시
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	
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	
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	